

무배당 모아어린이변액유니버설보험

하나HSBC생명보험주식회사

## 확 인 서

무배당 모아어린이변액유니버설보험을 개정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12년 10월 19일

하 나 HSBC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

선 임 계 리 사 서 종 무 (인)

#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 무배당 모아어린이변액유니버설보험

###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모아어린이변액유니버설보험

###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종신	종신납	월납	주피보험자 (주된 보험대상자)	20세 ~ 60세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	0세 ~ 15세

※ 태아(胎兒)는 이 보험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될 수 없음

### 3.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1,000만원 이상

###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 없음

###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 가.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2년(144회 납입) 후 납입보험료 중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과 「당해 보험료 납입직전까지 납입된 기본보험료 누계액」의 차액은 기본보험료로 한다. (이하 초기 12년간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의무납입기간”으로 한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로서 납입보험료 중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초과부분을 말한다.

#### 다. 보험료 납입한도

##### (1) 기본보험료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가입나이	월납 기본보험료의 한도
20세 ~ 49세	보험가입금액의 1.0% ~ 2.0%
50세 ~ 59세	보험가입금액의 2.0% ~ 3.0%
60세	보험가입금액의 3.0% ~ 4.0%

(2) 추가납입보험료

①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선납포함)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시중금리가 최저보증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추가납입한도를 상기의 한도의 9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다.

②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 보험료는 ‘①’의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①’의 납입한도에서 인출금액의 누계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한다.

③ 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소납입한도는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한다.

라. 「22. 기타사항」의 “아”의 적용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교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범위가 “다”에서 정한 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교체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납입하던 기본보험료를 교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기본보험료로 한다.

6.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2년(144회 납입) 이내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포함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의 “다”에서 정한 납입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2년(144회 납입) 이후

계약자는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다만,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해당월의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7.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부터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의무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라 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의무납입이 일시중지된 기간(이하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이라 함) 동안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된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의 납입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함.)

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8.

월대체공제액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월대체공제액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8. 월대체공제액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월대체공제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라.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가능횟수는 총 5회를 한도로 하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누적하여 36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의 신청은 월단위로 가능) 또한 주보험 보험료의 의무납입기간과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상이한 경우 의무납입 일시중지 신청가능횟수는 주보험의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주보험 보험료의 의무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을 할 수 없다.

마.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바. 회사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의 종료(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으로 인한 월대체공제액이 해지환급금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사. “다” 및 “바”의 월계약해당일은 보험계약일부터 1개월 단위로 경과된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8. 월대체공제액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2년(144회 납입) 이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를 월대체공제액으로 하여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한다.

나.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및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2년(144회 납입) 이후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월대체공제액으로 하여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다. 우리아이 교육자금 지급사유 발생 후  
우리아이 교육자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를 공제한다.

라.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공제액이 공제됨을 서면에 의하여 계약자 동의를 얻는다.

## 9. 기본보험료의 감액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보험료 감액과 동시에 동일한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다.

나. 기본보험료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지처리하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 10. 보험료의 차등적용 등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

매월 기본보험료	할인금액
30만원 초과 50만원 미만	기본보험료 중 30만원 초과부분의 0.5%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0원 + (기본보험료 중 50만원 초과부분의 1.4%)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8,000원 + (기본보험료 중 100만원 초과부분의 1.6%)
200만원 이상	Min{ 24,000원 + (기본보험료 중 200만원 초과부분의 2.0%), 기본보험료의 1.5% }

※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을 이유로 기본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기본보험료 기준으로 고액계약 할인을 적용한다.

## 11.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2년(144회 납입) 이내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기간으로 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2년(144회 납입) 이후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 제공제약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그 월계약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한다.

## 12.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특약보험료 제외)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약관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이 계약의 약관 제48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13.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또는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한다.

• 인출 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left( 1 - \frac{\text{당시 인출금액}}{\text{Max}\{\text{인출시 계약자 적립금,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right)$$

• 감액 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전 계약자 적립금}}$$

다. “나”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의 「인출직전(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해당 인출(감액) 발생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나”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라. 계약자가 해당월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특별계정에 적립된 계약자적립금(이하 “특별계정 내

계약자적립금”이라 한다)에서 월대체공제액으로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한다.

### 13.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 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 14.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에 관한 사항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의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한다.
-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정의)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 (3) 특별계정운영보수,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 (이하 상기 네 가지를 합한 보수를 ‘특별계정운영보수’라 한다.)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특별 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별계정운영보수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최고한도 이내에서 회사가 결정하며, 변경된 특별계정운영보수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서 유지되고 있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특별계정운영보수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적용한다.
- (4)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4] ‘보증준비금 산출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하여 적립한다.
- (5)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은 사망시점에 사망보험금이 최저사망보험금보다 적은 경우 사망보험금 부족분으로 사용한다.
- (6) ‘(4)’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은 계약소멸, 해지(부활가능기간이 지난 계약) 등 감소계약에 대한 보증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나. 펀드의 유형 및 수

-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① 단기채권형 : MMF형 펀드, 단기채권(편입일 현재 만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채권 위주)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콜론(Call Loan),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및 기타 제예금 등의 단기 유동성 금융자산에 순자산(NAV)의 90%이상 투자하여 안정성과 유동성을 추구한다.
  - ② 채권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펀드,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의 90%이상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한다.



- ③ 주식성장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펀드,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형 펀드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의 90%이내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 ④ 글로벌혼합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펀드,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이내로 투자하고, 글로벌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 등에 순자산(NAV)의 90%이내로 투자하여 전 세계 주식 및 채권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가지도록 운용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 ⑤ 아태브릭스 주식성장형 : 국내·외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형 수익증권(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에 순자산(NAV)의 60%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우량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형 수익증권, 대출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한다. 다만, 주식 등에의 투자는 아시아 등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 위주로 운용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동 펀드는 2006년 4월 24일 설정된 「실크로드혼합형」의 명칭을 변경한 펀드이다.)
  - ⑥ 인덱스성장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수익증권,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이내로 투자하고, 주식(거래소 및 코스닥주식 포함, 관리종목은 제외), 주식형 수익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90%이내에서 투자하며,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200(KOSPI200) 등을 목표지수로 하여 인덱스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
  - ⑦ 차이나주식성장형 : 차이나 주식 및 주식형펀드,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형 수익증권(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에 순자산(NAV)의 90%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우량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형 수익증권, 대출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한다. 차이나 주식형 펀드는 자산 총액의 60%이상을 중국회사 또는 주요 수익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에 투자하여 투자된 자산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주식형 펀드이다.
- (2) “(1)”에서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 또는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1)”의 투자 대상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 (4) 새로운 펀드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기존의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

다. 펀드 자동재배분

- (1) 계약자는 계약시 펀드 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계약체결시 선택한 펀드의 투입비율로 자동 재배분 된다.
- (2) 보험기간 중 펀드의 투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의 투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 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자동 재배분 된다.
- (3)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4) 펀드 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라. 특별계정 운용보수에 관한 사항

- (1) 펀드종류별 특별계정운영보수는 아래 표의 비용으로 한다.

펀드명	특별계정운영보수
단기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140% (매일 0.000 383 562%)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290% (매일 0.000 794 521%)
주식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450% (매일 0.001 232 877%)
글로벌혼합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405% (매일 0.001 109 589%)
아태브릭스주식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305% (매일 0.000 835 616%)
인덱스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350% (매일 0.000 958 904%)
차이나주식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405% (매일 0.001 109 589%)

(2) 펀드종류별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펀드명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단기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160% (매일 0.000 438 356%)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210% (매일 0.000 575 342%)
주식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550% (매일 0.001 506 849%)
글로벌혼합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745% (매일 0.002 041 096%)
아태브릭스주식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845% (매일 0.002 315 068%)
인덱스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850% (매일 0.002 328 767%)
차이나주식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745% (매일 0.002 041 096%)

(3) 펀드종류별 특별계정수탁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펀드명	특별계정수탁보수
단기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30% (매일 0.000 082 192%)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30% (매일 0.000 082 192%)
주식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30% (매일 0.000 082 192%)
글로벌혼합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80% (매일 0.000 219 178%)
아태브릭스주식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80% (매일 0.000 219 178%)
인덱스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30% (매일 0.000 082 192%)
차이나주식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80% (매일 0.000 219 178%)

(4) 펀드종류별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펀드명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
단기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30% (매일 0.000 082 192%)
채권형	
주식성장형	
글로벌혼합형	
아태브릭스주식성장형	
인덱스성장형	
차이나주식성장형	

마.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1)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나”에서 규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펀드 각각에 대하여 펀드별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별 투입비율의 변경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 (2) 추가납입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지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로 투입되며,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된다.
- (3)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한다)는 “(1)” 또는 “(2)”에서 설정한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된다.

(4) 계약자의 펀드변경

-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펀드로 이전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펀드 적립금의 이전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② 회사는 “①”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5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 ③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②”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5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 ④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계약자의 펀드 변경 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5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바.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사.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아. 초기투자자금

-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 (2) “(1)”에서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 ② “(1)”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 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100분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 ③ “①” 및 “②”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아.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계약의 체결 등)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자.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한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③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④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2)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차.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③ “①” 내지 “②”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1)”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3) 회사는 “(1)” 및 “(2)”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연간 펀드의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16.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가.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 적립금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월계약해당일에 월대 제공제액[위험보험료, 사업비(수금비 제외),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나.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운용보수를 차감한다.

다. 이 계약의 약관 “제7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에 관한 사항”에 의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후에도 계약자적립금의 계산은 “가” 및 “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7.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다만,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22. 기타사항」의 “나”에 따라 이체한다)
- (2)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상환이 있는 경우
-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는 경우

- (3)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5)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  
(다만, 월대체공제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6)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 “(1)”의 규정에 의한 이체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 18.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우리아이 교육자금 지급기간 제외)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한도로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하고, 계약 후 경과 기간 10년이내의 총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인출 신청일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출금액은 인출 후 특별계정 내 계약자적립금이 10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또는 인출 당시 2개월분 월대체공제액 중 큰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

다. 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금액은 「12.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의 “나” 에 따라 계산한다.

라.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하다.

## 19.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다음의 금액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만 납입하여야 한다.

- (1) 의무납입기간(12년) 이내 실효된 경우 : 의무납입기간까지는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이상의 금액, 의무납입기간 종료 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는 연체된 월대체공제액 및 수금비 이상의 금액.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 납입하지 아니한 기본보험료는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의무납입기간(12년) 이후 실효된 경우 :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공제액 및 수금비 이상의 금액

나. 변액보험은 “가”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다.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시에는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예정이율로 적합한 계약자적립금과 연체된 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자연식 위험보험료,

사업비(수금비 포함) 및 특약보험료 제외,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승낙일까지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 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시점의 펀드 투입비율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라. “다”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부활(효력회복)승낙 후 연체된 보험료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납입완료일+제2영업일」, 연체된 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한 후 제2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납입완료일+제2영업일」, 연체된 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한 후 제2영업일 경과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 승낙일로 한다.

마. “가”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 이 계약의 약관 제36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약관 제37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된다.

## 20.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보험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1.5%」로 부리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한다(다만,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16. 계약자적립금의 계산」의 계약자적립금에 포함되며, 대출시 펀드별 분배 비율은 대출일 기준 펀드별 적립금 비율로 한다).

다. 계약자는 “가”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은 상환일로부터 「상환일+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부리적립 한 후, 「상환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상환일 기준 펀드별 분배금액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투입하고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수한다.

## 21. 우리아이 교육자금 계산시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가. 우리아이 교육자금 계산 시 적용하는 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가’의 공시이율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한다. 회사는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 공시기준이율의 산출

-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율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국고채 수익률과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출 평균하여 산출한다.

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내부지표 + 외부지표) / 2

- 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 I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수익
- E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비용
- A<sub>12</sub>: 산출시점 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A<sub>0</sub>: 산출시점 직전 1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외부지표 산출식 =  $\frac{B_1 + B_2 + B_3}{3}$

- B<sub>1</sub> : 국고채 수익률의 산출시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B<sub>2</sub> : 회사채 수익률의 산출시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B<sub>3</sub>: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의 산출시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가중평균이율(B<sub>i</sub>)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3}$

B<sub>i</sub>(-3)산출시점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B<sub>i</sub>(-2)산출시점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B<sub>i</sub>(-1)산출시점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AA-)의 최종호가 수익률로 한다.
-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1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회사채 평균수익률, 국고채 평균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 세부 지표 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의 실세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라. “나”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나”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한다.

바. 공시이율은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계약일부터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한다.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른다.

## 22. 기타사항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1)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2) “(1)”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제1회 보험료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다만,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펀드

의 투자수익률에 대하여 펀드투입비율로 가중 평균한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②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2년(144회 납입) 이내  
납입기일 전전일(前前日)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기일」, 납입기일의 전일(前日)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제2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납입기일의 전전일(前前日)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기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납입기일 전일(前日)에 납입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후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고 「납입일+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하며, 납입기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납입일부터 「납입일+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2년(144회 납입) 이후  
「보험료 납입일+제2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해당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③ 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 2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해당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다.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 및 우리아이 교육자금 지급기간 중에는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라. 계약자적립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기간 동안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보장계약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 (2) 계약자적립금 변동에 관한 사항
- (3)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시 해지환급금 등

마.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감독원에 보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특별계정 총좌수
- (2) 특별계정 기준가격
- (3) 특별계정 자산총액
- (4) 특별계정 자산운용 연평균 수익률
- (5) 특별계정 자산구성내역 및 비율
- (6) 특별계정 자산구성비율 변동내역
- (7) 특별계정운영보수,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
- (8)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바.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 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사. 한 건의 계약으로 여러 계좌를 가입할 경우에는 한 계약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및 보험계약 청약서로 운영할 수 있다.

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에 관한 사항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대상 계약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모두 생존하고 있는 계약으로 해지되지 않은 계약을 대상



으로 한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교체

- ① 교체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를 교체후 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한다.(이하 “교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한다)
- ② 교체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교체 후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신청 및 취소

- ① 계약자는 교체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5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로부터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 30일전까지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변경(신청 취소)이 가능하다. 다만, 회사의 승낙 이후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의 교체대상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을 무효로 한다.
- ② “①”에 의하여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에 교체되어 “교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더 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교체는 불가능하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교체신청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교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장이 개시된 이후에 회사는 교체신청서에서 알린 사실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지 않는다.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신청 후 승낙 거절에 관한 사항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교체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교체 당시에 판매하고 있는 동일 담보의 유사유형 상품에 준하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계약자가 “교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장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로 교체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교체 전 계약내용을 적용한다.

- ① 회사가 교체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 ② 교체신청시 계약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교체신청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 한때

(7) “교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장이 개시된 후 새로이 부가한 특약이 있는 계약에서 “(6)”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새로이 부가한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후 계약에 관한 사항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후의 “교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전 보험가입금액과 동일하다.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후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교체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한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월대체공제액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③ “②”의 교체 당시의 계약자 적립금은 교체 이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또한, 교체 후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한다.

(9)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의 통보에 관한 사항

회사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5세가 되기 15일전(前)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교체에 대한 내용(신청방법, 신청시기, 교체시 특약의 중도부가 등)과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장이 종료됨을 계약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자. 중도부가특약에 관한 사항

“사”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를 한 계약의 경우 교체 당시 회사가 부가하는 선택특약을 중도에 부가할 수 있다.

차.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 전환에 관한 사항

- (1)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된다.
- (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카.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제외한 범용으로 한다.

타. 재간접투자기구 관련 공시에 관한 사항

회사는 「15.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나” 에서 정한 펀드 중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그 사실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특별계정운영보수,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추가적으로 부가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 수수료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파. 선납보험료에 관한 사항

- (1) 이 계약에서 의무납입기간 12년(144회 납입) 이내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는 계약일 이후 1개월 이 지난 후부터 선납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2)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 (3) 선납보험료는 납입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부리 적립하고, 월계약해당일에 당월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당월 기본보험료를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을 특별계정으로 투입한다.

(별첨 제1호)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서식

(별첨 제2호)

##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3호)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신청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의 신청, 취소 및 승낙>

교체 신청	보험나이 25세[교체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나이] 계약해당일 ~ 보험나이 26세 계약해당일 30일 전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체 취소	계약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교체 신청의 변경(신청 취소)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장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로 교체 후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약관을 적용합니다. 1. 회사가 교체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2. 교체신청시 계약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교체신청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 한 때
회사의 승낙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당시에 판매하고 있는 동일 담보의 유사유형 상품에 준하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교체신청 거절이 가능합니다.
교체신청의 무효	교체를 승낙 하였으나, 교체의 효력이 개시되기 전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종 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교체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알릴 의무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교체신청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장이 개시된 이후에 회사는 교체신청서에서 알린 사실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의 효력>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보험금 보장개시시점 및 “자녀 재해골절 치료비” 등 자녀[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보장 종료시점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계약 해당일
교체 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보장 종료 시점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보험가입금액 및 기본보험료	교체 전과 동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후 펀드운용, 계약자 적립금의 계산, 보험료의 납입 등 계약유지에 관한 사항은 교체 전과 동일합니다.	

<중도부가특약의 선택>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가 승낙된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특약을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교체하기 전에 상기 교체시 알아두실 사항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상기 본인 확인자    계약자    ○○○ (서명)